민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지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12 발의연월일: 2025. 4. 22.

발 의 자: 박지원·장철민·김원이

민형배 • 이건태 • 문진석

부승찬 · 임미애 · 박지혜

허성무 · 서미화 · 신장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, 배우자,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,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.

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관련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결정으로 위헌으로 판단했음.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응하기 위해 기여분에 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: 2201771)이 기발의되었고,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입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혀왔음.

그러나 법원행정처에서는 기여분 제도와 유류분제도의 단절을 해소 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에 대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 지만, 기발의된 의안만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어 피상속인이 기여상속인에게 사전증여 또는 유증한 부분에 대해 기여를 고려하여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추가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개진하였음.

이에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관련해 단서를 신설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기여에 상응한 증여나 유증이 이뤄진 경우에 해당 증여 또는 유증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피상속인이 기여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 또는 유증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기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(안 제1008조 개정).

법률 제 호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0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08조(특별수익자의 상속분)

다만,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그 기여에 상응하여 증여 또는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, 해당 증여 또는 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00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확정되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1008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1008條(特別受益者의 相續分)	제1008조(특별수익자의 상속분)
共同相續人 中에 被相續人으로	
부터 財産의 贈與 또는 遺贈을	
받은 者가 있는 境遇에 그 受	
贈財産이 自己의 相續分에 達	
하지 못한 때에는 그 不足한	
部分의 限度에서 相續分이 있	
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피상속인의 재산의</u>
	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
	를 한 자에 대하여 그 기여에
	<u> 상응하여 증여 또는 유증이 이</u>
	루어진 경우, 해당 증여 또는
	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
	<u>니한다.</u>